

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6일(목)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5. 20. 성북구청장 제출 (의안번호 479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5. 21.
- 다. 상정일자: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【2025. 6. 11. 상정·의결 (원안가결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문화국장 임근수)

가. 제안이유

-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가)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
- 2) 설치목적 :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
- 3) 설치연도 : 2023. 7. 13.
- 4) 기금의 용도
 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- 지역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
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나.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개요

1) 운용계획 변경 사유 :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(증 49,608천원)

- 2024년 목표 기부모금액을 초과하여, 기금 수익금이 당초 수익금 20,317천원 보다 49,608천원 증액됨
- 2025년 고향사랑기금 규모

예치금회수액 ①	2025년도 기금수입 예상액 ②	2025년 최종 기금예산액 (①+②=③)
119,837천원	62,686천원	182,523천원

2)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자금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25년 수입계획				2025년 지출계획			
항 목	당초 수입액	변경 수입액	증 감	항 목	당초 지출액	변경 지출액	증 감
합 계	132,915	182,523	49,608	합 계	132,915	182,523	49,608
전입금	-	-	-	비용자성사업비	1,600	1,600	-
보조금	-	-	-	융자성사업비	-	-	-
차입금	-	-	-	인력운영비	-	-	-
융자금회수 (이자 포함)	-	-	-	기본경비	-	-	-
예탁금원금회수	-	-	-	예탁금	-	-	-
예치금회수	70,229	119,837	49,608	예치금	131,315	180,923	49,608
예수금	-	-	-	차입금원리 금상환	-	-	-
이자수입	2,686	2,686	-	예수금원리 금상환	-	-	-
기타수입	60,000	60,000	-	기타지출	-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2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고향사랑기금¹⁾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(제정 : 2021. 10. 19. 시행: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이 조에서 “고향사랑 기부금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2023. 1. 1.의 시행²⁾의 시행에 따라 '고향사랑기부제'가 도입되면서 모금된 고향 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변경안은 '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, 기금 수익금이 당초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여 '2025회계연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수입을 당초 보다 4,960만원 증액된 1억 1,983만원으로 수입계획에 변경하고,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4,96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예치금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72.5%, 4,960만원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제2항³⁾단서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-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

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7.13.]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없음」

5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6. 26. (목)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5. 20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478호)

나. 회부일자: 2025. 5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【2025. 6. 16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생활국장 홍 지 현)

가. 제안이유

○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5년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가)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
- 2) 설치목적 :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
- 3) 설치연도 : 1993년

나)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1) 기금사업의 목표

-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2)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사업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
- 지원대상 : 성북구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지원기준
 - 금리 및 융자기간 : 연 1.2%,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 - 융자한도 : (담보) 최대 1억 원 이내, (신용) 최대 5천만 원 이내

다).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개요

1) 기금변경 사유

-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 반영

2) 2025년도 기금변경 내역

- 2024년도 기금 정산 내역

(단위:원)

조성액			당해연도 사용액 (라)	당해연도말 조성액 (마)=(다)-(라)
전년도말 (가)	당해연도 (나)	계 (다)=(가)+(나)		
1,775,736,915	2,330,732,544	4,106,469,459	2,982,750,000	1,123,719,459

○ 2024년도 기금 변경 총괄

(단위: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
기금 총 운용액	3,421,061	3,770,188	+349,127

- 2025년 기정예산 3,421,061천원에서 3,770,188천원으로 증액 편성 · 당초
예치금 774,592천원에서 1,123,719천원으로 증액 편성

3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3,421,061	3,770,188	+349,127	
융자금 회수 (이자 포함)	2,566,469	2,566,469	-	
예치금 회수	774,592	1,123,719	+349,127	2024년도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 및 융자미실행
이자 수입	80,000	80,000	-	

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-편성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3,421,061	3,770,188	+349,127	
비용자성 사업비	102,750	102,750	-	
융자성 사업비	3,000,000	3,000,000	-	
예치금	318,311	667,438	+349,127	2024년도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 및 융자미실행

○ 2025년도 기금 조성(안)

(단위:천원)

조 성 액		사 용 액		2025년말 조성액 (잔 액)
3,770,188		3,102,750		667,438
·용자금 회수: 2,566,469 ·예치금 회수: 1,123,719 ·이자 수입: 80,000	-	·비용자성 사업비: 102,750 ·용자성 사업비: 3,000,000	=	· 2026년도로 이월(예치금)

- 당초 '24. 9월 예측했던 하반기 용자금 회수액 대비 중도 상환금액 및 용자 미실행 금액이 발생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0조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0조4)에 따라

- 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0조(중소기업육성기금)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12.31.)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20.12.31.)
1. 일반회계 전입금 (개정 2020.12.31.)
 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(개정 2020.12.31.)
-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5.5.14, 2020.12.31.)
1.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,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자

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변경안은 '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초과세입 및 융자미실행금 3억 4,912만원을 '2025회계연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수입에 반영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3억 4,912만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예치금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109%, 3억 4,912만원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제2항⁵⁾단서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-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.

2.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
3. 중소기업 및 중·소상공인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
4. 기금의 운용·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(개정 2015.5.14, 2020.12.31.)

5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